



조영식

파트너변호사

Email. yscho@gaonlaw.com

Tel. 02-3446-5424

Fax. 02-3446-5700

조영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후, 법무법인 울촌 조세그룹에서 7년간 대형 조세소송, 조세자문 등 다양한 조세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뉴욕대학교(NYU) LLM 학위(International Taxation Course)를 취득하는 등, 조세분야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영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근무한 경력을 통하여,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公法)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3)
미국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2007)
사법연수원 수료 (제29기,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경력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2020~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변호사 (2018~2019)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변호사 (2016~2018)
대법원 재판연구관(파견) (2014~201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10~2014)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2003~2010)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2023~현재)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조세법, 2023)

교육부 고문변호사 (2017-2018, 서남대 폐교시 청문절차 직접 진행)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7-2018)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공법과목 출제위원 역임

업무분야

조세자문/쟁송,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논문/저서

파산과 조세,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6

2008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14-1, 한국세법학회(2009)

실질과세원칙의 헌법적 고찰, 헌법논총 21집, 헌법재판소(2010)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위헌제청(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사건),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2012)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나타난 지방세제(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00인 초청 학술대회(2012)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와 장애연금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 각 적용할 법령,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2014)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법을, 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한 행위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당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또는 그러한 행위가 헌법상 대학자율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 법원도서관(2015)

기존의 장애등급에 대한 장애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된 상태에서 기존의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고 장애등급이 변경된 후 장애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애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 법원도서관(2015)

재요양에 따른 장애급여청구권의 범위, 노동법실무연구 제3권, 노동법실무연구회(2021, 권순일 대법관 퇴임기념논문)

주요활동

k생명 상장과 관련한 법인세 및 환급가산금 사건

s전자 메모리반도체 관세사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위법한 중복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도출)

분양보증수수료 사건(주택분양업체가 납부하는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

부산 강서구 철새도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사건(국세기본법상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대법원 사건)

H그룹, S건설, H가구 등 다수업체 세무조사 대응업무 수행